

資產評價에 관한 會計學的 研究

李 容 鎬

광주 서원전문학교 실무경영과

A STUDY OF ACCOUNTING ON THE EVALUATION OF ASSETS

LEE YONG HO

Department of Business management, Gwangju Seowon Junior College

目 次	
Abstract	第6章 資產評價의 特殊한 事例
第1章 問題의 提起	第7章 評價法規
第2章 資產評價의 發達	第8章 評價基準의 選擇
第3章 資產評價의 重要性및目的	第9章 結論
第4章 資產評價의 本質	參考文獻
第5章 評價의 基準	

ABSTRACT

Valuation has long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n accounting. Much has been discussed about it and various valuation basis and methods have been developed and argued for each in accounting profession.

Despite these long and serious discussion about valuation, the outcome of the accounting measurement process which is supposed to represent fairly the business income and financial position is believed to be far from satisfactory to the users of accounting information.

It has once been strongly argued that accounting is basically not the valuation process, and that valuation itself is not a fundamental function in accounting.

But different valuation basis or method results in different accounting figures. Thus, valuation, although not a fundamental function, is a very important problem area in accounting.

Accounting measures are expressed in monetary terms, they usually understood as something related to the economic value, which in today's monetary economy is

measured by monetary unit.

Therefore as we studied chapter 1-9, it seems to be necessary to point out some problems to cost basis theory from this view point of general information system. And I suggest some points as follows:

First of all, In calculation structure:

The traditional cost basis was helpful in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s of system accounting, but now, it is better to substitute it for the current price basis or market price basis, which has many profitable characters necessary for the interested persons to be helped in decision making.

The best way, however, should be the multi-dimentional estimation basis which is adopting the advantage from both cost basis and current price basis.

Secondly, in the evaluation of assets.

It is recommandable to adopt deductive accounting principle in place of the inductive accounting principle, while the latter has given the importance on the generally accepted or the traditional experimentalism, the former on the theoretical, rational and scientific thinking.

Lastly in the choice of the valuation basis:

The choice of valuation basis is basically a selection of a set of assumptions concerning the accounting purpose.

Each set of assumptions related to the time of exchange, type of market and form of goods or services exchanged has its own unique meaning, and therefore each valuation basis has its merits depending on the purposes it is intended to be used for. A valuation basis cannot serve all the purposes best and accounting cannot satisfactory carry out its objectives with one best valuation basis.

第1章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 企業會計는 稅務會計의 영향아래서 傳統의인 企業會計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어야 할 諸基準을 浸蝕당하고 있으며, 또 蝕食된 會計實務가 아무런 理論의 根據없이 會計事象을 租稅法的 見地에서 다루어 오고 있는 實情이다. 다시 말하면 從來의 企業會計에서는 會計事象을 稅法的解釋 즉 法的要求(legal requirements)¹⁾로 받아들이고 取扱해온 것이 많기 때문에 稅務會計 慣習이 企業會計 處理上의 주된 役割을 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1976年 7月과 8月)에 改正된 上場法人等の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과 企業會計原則에서도 制度的 企業會計가 지녀야 할 諸基準을 새롭게 규정한 事項은 전혀 없고 오래 전부터 制度的 企業會計가 지니고 있던 原則과 基準들을 法條化 또는 成文化 形式으로 確認, 宣言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改正된 企業會計原則에서는 啓蒙的이고 指導的이며 教育的인 각도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社會的 經濟的인 與件도 從來와는 判異하게 달라져 가고 있다. 公認會計士의 法定監査가 擴大 強化됨에 따라 對象企業에서는 企業會計事象을 稅法的인 側面보다 當該企業會計原則이 본래부터 지녀야 할 「一般的으로 公正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原則

1) Paul Grady,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7 (New York: AICPA 1965) P.55.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觀点에서 測定하고 傳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實務의 實踐可能性²⁾과 理論의 普顯妥當性³⁾을 가진 實務의 一般의 基準인 것으로 理解되어 지는 것이다.

이런 社會的 經濟的 要請은 점차 稅法的 拘束力 以上으로 強力하게 나타날 것이다.⁴⁾

위와같은 會計學的 背景하에서 現在의 根本的인 會計觀은 靜態觀에서 動態觀으로 變換되고 있다. 即 貸借對照表를 中心의 重要性으로 보는 時價主義會計에 對하여 原價主義會計의 立場 即 損益計算書를 重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過去 貸借對照表가 一時點에 있어서의 正確한 財政狀態를 目的으로 한때의 資產評價의 意義는 어느정도 없어지고 만 것이 된다. 定期決算에 있어 損益計算을 原價 또는 費用의 年度配分の 觀念을 가지고 行하면 損益計算으로부터 資產評價가 排除됨과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代의 資產評價는 年度末의 殘存原價가 年度末 現在資產의 價値 即 有用性을 表示하지 않으면 안된다.

現代의 財務會計는 貨幣價値不變의 假定下에 記錄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貨幣價値變動의 事實에 의한 會計數值調整인 貨幣價値의 評價인 境遇와 資產評價의 計算記錄 表示인 資產價値의 評價인 境遇와는 混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本論에서는 資產評價의 現代會計學的 分析과 評價基準 評價學說 및 特殊評價의 境遇를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第2章 資產評價의 發達

債權者保護의 立場에서 立法된 獨逸商法精神에서 본다면 資產을 處分해서 얻을 수 있는 價格으로 評價한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固定資產이 增加함에 따라 賣却時價로서는 評價가 事實上 不可能하게 되었다.

Simon⁵⁾의 主觀學說은 資產을 賣却目的이 아닌 即 企業內部에서 使用 消耗되는 設備財產과 直接間接으로 賣却되는 商品 原材料등 販賣財로 分類했다. 前者는 使用價値에 의해서 評價되고 後者는 交換價値에 의해서 評價된다. 이 學說은 主觀的인 意味가 恣意的인 評價를 許容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받기 쉬웠다.

Staub, Rehm에 의하여 營業價値學說로 修正되었는데 이는 財貨를 設備財와 販賣財로 分類하나 兩者 모두 營業의 特性을 고려하여 客觀的 標準에 의하여 決定한다는 것이다. 即 設備財는 取得原價를 基礎로 하고 그것에다 減損을 控除하여 評價하고 販賣財는 賣却時價로 評價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Fischer, Gerstner(獨逸)는 原價主義를 주장하고 恣意性을 排除하기 위하여 帳簿價額으로 評價를 繼續하는 것이 正當하고 確實하다고 한다.

Paton(美) Schmidt(獨)은 時價主義를 주장하고 企業이 社會的 存在인 이상 社會的 價値의 동요에 영향을 받으므로 市場價値로서 資產을 評價하여 진실한 財政狀態를 表示해야 한다고 주

2) J. W. Pattiilo: "The Foundation of Financial Accounting" 1965. P. 5

3) A. C. Littleton: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1953. P. 147.

4) 金光錫 新企業會計原則 P. 1

5) Herbert A. Simon: "Theories of Decision Making in Economics and Behavioral Sc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9, No. 3, June 1959.

장하고 있다.

時價論者는 貸借對照表의 客觀性을 強調하고 時價에 의하지 않고서는 眞實한 財政狀態를 表示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原價論者는 個別的 主觀的 立場에 서있으며 損益計算書에 重點을 두고 있으므로 恣意性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原價主義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動態論的 思考方式이 一般化된 近代企業會計의 本質로 보아 資産은 支出을 장래의 年度에 配分할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되었으며 原價主義를 會計原則으로 採擇하게 되었다.⁶⁾

第3章 資産評價의 重要性 및 目的

(1) 資産評價의 重要性 (Significance)

決算時의 資産評價는 當該期間의 純利益에 重大한 影響⁷⁾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評價는 適正한 것이어야만 한다. 萬若 資産을 過大하게 評價한다면 그 年度의 利益은 그만큼 多額으로 表示된다.

따라서 移越되는 資産은 內容的으로 貧弱하게 되어 이른바 架空利益(profit on paper)이 算出된다. 萬一 이것을 基準으로 하여 配當하게 되면 事實은 資本의 配當이 되고 또한 이것을 課稅基準으로 한다면 資本의 課稅가 되어 結局은 資本侵蝕이 되므로 堅實한 會計處理가 되지 못한다. 이것과 反對로 資産의 過小評價는 그 年度의 利益은 그만큼 減少되지만 現實의 資産內容은 帳簿金額 보다도 豊富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秘密積立金이 發生한다. 秘密積立金이 많을수록 企業의 財務的 基礎는 堅實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렇게 作成되는 貸借對照表는 眞實性原則에 背馳될 뿐만 아니라 또한 商法上의 株主保護 債權者 保護의 精神에서 보더라도 適正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⁸⁾

(2) 資産評價의 目的

會計의 理論構造는 經濟社會의 發展에 따라 債權者를 위한 財産計算으로 부터 投資家를 위한 損益計算으로 그 中心課題가 移行되어 왔다. 이에 따라 資産評價의 問題도 時價主義評價에서 原價主義評價로 移行되게 되었다. 즉 財産計算 中心의 靜態論에서 會計를 企業이 所有하고 있는 財産을 實際調査하여 이에 貨幣價額을 賦與하는 過程 즉 評價의 過程(process of valuation)으로 理解하였다. 企業의 財政狀態를 바르게 報告하는 길은 貸借對照表에 現在價値로 (Current value)로 評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이 時價主義의 一般原則이다.

動態論에서는 會計는 本質的으로 Process of valuation이 아니고 原價와 收益을 當期와 次期以後의 會計期間에 割當하는 配分(process of allocation)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볼때 貸借對照表는 原價配分의 結果, 장래의 損益計算에 기여할 留保項目이 集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動態論에서는 靜態論에서 重要視하였던 財産狀態의 表示라고 하는 會計機能은 상실되고 貸借對照表는 損益計算의 決果에 따라 작성되는 것으로 된다.

動態論에서는 會計를 本質的으로 原價의 配分過程으로 理解하고 있기 때문에 消滅原價

6) 申文澈 最新會計學 博英社. 1975. P. 57

7) H. Bierman and A. R. Drebin, Financial Accounting-An Introduction (The Macmillan co, 1968) P. 15.

8) 鄭守永 新會計學 1971, P. 47~48.

(expired costs)를 計上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未消滅原價(unexpired costs)를 確定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原價 以外의 價値로 資産을 評價하여 原價配分을 歪曲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에서 原價主義評價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會計情報를 必要로하는 利害關係者에게 意思決定時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各중의 財務的 情報를 提供하는 것으로 變遷하게 됨에 따라 ①損益決定 ②投資家 ③債權者 ④經營者를 위한 評價로 되었다.⁹⁾

第4章 資産評價의 本質

1. 우리나라 教授들의 本質分析

資産價란 모든 未來所得의 流入額을 現價로 割引한 總計(The assets value is the sum of the present values of the entire future income stream)¹⁰⁾라고 A.A.A는 정의하고 있다.

會計學上의 資産의 評價란 一定時点(決算日)에 있어서 企業에 소속하는 各種 財産의 價格을 決定하는 것을 말한다.

貸借對照表에 計上하기 위해 資産을 測定 表示하는데 있어 貨幣價値의 變動으로 인한 資産의 一定時期的 貨幣價値를 現實에 맞게 評價하여 計上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資産을 評價하게 된다.¹¹⁾라고 林震燮, 金貞泰 教授는 定義하고 있다.

또한 評價(valuation)란 價値(value)의 決定을 뜻하며 價値란말은 여러가지 뜻으로 使用되고 있다. 즉 主觀的인 効用에 따른 經濟價値, 市場에서 客觀的으로 決定되는 時價(賣却時價, 再買時價등)가 있다.

繼續企業의 會計에서 客觀的인 時價가 個別的인 資産에 適用되는 것은 一部の 例外를 제외하면 있을 수 없다. 또 主觀的인 効用價値가 고려 되는 경우도 없다. 會計上의 評價 및 그 節次는 그 目的에 따라 制約을 받게 된다고 蘇眞德 教授는 定義하고 있다.¹²⁾

그러나 價値란 말이 여러가지 意味로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明瞭하지 못한점이 많다. 會計學에서는 이와같이 不明瞭한 價値라 하더라도 企業과 利害關係者 集團과의 經濟關係를 對象으로 하여 企業에 流入하는 價値(input value) 또는 企業으로 부터 流出하는 價値(output value)를 測定하여 그 結果를 利害關係者集團에 傳達하게 된다. 이때 모든 財貨用役의 價値는 共通의 尺度에 의하여 測定되게 된다. 그리고 共通의 尺度로서는 貨幣單位를 使用한다. 그러므로 會計學에서 資産評價라 하면 資産에 貨幣的 價額을 賦與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¹³⁾라고 李正浩教授는 定義하고 있다.

2. 外國教授들의 本質分析

Webster 사전에는 評價는 (valuation) 어떤 事物(評價對象)의 「貨幣價値를 推定 또는 賦與하는 것 【estimating or assigning the monetary worth of (the valued)】 또는 「有用性,

9) 李正浩, 會計理論 1976. pp. 216~217.

10) A. A. A.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Preceding Statements and Supplements. pp. 3~4

11) 林震燮, 金貞泰 會計學 1976. P. 87.

12) 蘇眞德 會計學原論 1976.

13) E.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70), P. 260.

重要性 또는 一般的 價値를 秤量하거나 재는 것」(rating or scaling in usefulness, importance, or general worth)¹⁴⁾을 意味한다. 이러한 定義에 의하면 評價는 効用價値와 交換價値를 包含한 一般的인 價値概念과 不可分の 關聯을 가진 概念으로 理解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評價시스템의 機能은 價値를 創造하는 것이 아니라 評價對象에 內在하고 있는 屬性을 그 有用性 重要性 또는 一般的 價値의 面에서 表現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評價란 「現象을 나타내기 위하여 寫體를 賦與하는 過程」(the process of assigning symbol, or symbols to represent the objects or events)을 測定의 一般的 概念으로 할 때 測定值가 價値의 크기를 나타내는 形態의 測定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近代 會計學에 있어서 測定의 概念에 대하여 여러가지 相異한 解釋이 내려져서 概念의 理解에 混同을 주고 있다.

Paton과 Littleton은 會計測定에 있어서 價値를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會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情報의 形態를 나타내 주는 用語로서는 價値(value)라는 말보다 「測定事項」(measured consideration)이라는 表現이 더 適切하다. 會計가 價値를, 記錄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터 混同이 惹起된다. 어떠한 交換에 있어서의 測定事項 또는 價格總計(Price aggregate)는 그 交換의 時點에 있어서 賣買 雙方의 相互評價를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制限된 意味와 指定된 時點에 있어서는 그러한 價格總計를 記錄한 것이 價値의 表現과 一致할지 모른다. 그러나 交換의 순간이 지나면 價値는 變化하며, 이에 反해 記錄된 價格總計는 變하지 않기 때문에 兩者 사이에는 乘離가 생긴다. 會計에 있어서는 價格總計가 여러가지 相異한 去來를 同質的인 用語로 表現해주는 最善의 手段이다.」¹⁶⁾

그러나 會計情報은 數量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貨幣額, 즉 貨幣單位의 數로 表現된 것으로서의 特性을 가진다.

즉 會計情報의 利用者는 會計報告書에 나타나 있는 貨幣額을 經濟的 價値와 連結된 것으로 理解하는 것이 一般的이며 또한 正常的인것이라 할 수 있다. 價格總計를 會計記錄의 基準이라고 主張하던 Paton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原價(cost)와 價値는 相反되거나 서로 相互 排他的인 用語가 아니다. 取得時點에 있어서 原價와 價値는 大部分의 去來에 있어서 實質的으로 一致한다. 事實上 原價는 主로 取得時點에 있어서 公正價値(fair value)에 類似한 것을 나타내 준다는 點에 있어서 그 意義를 갖는다. 原價는 基本的으로 支給된 金額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重要한 것이 아니라 取得한 것의 價値의 測定值에 準하는 것이기 때문에 重要한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會計測定에 있어서 價値는 本質的인 測定事項이며, 따라서 價値를 秤量하는 會社 評價와 會計測定은 緊密한 關聯을 가진 概念이라 할 수 있다.

會計測定은 具體的 單位現象(去來)을 直接 評價하여 一定한 貨幣額으로 表現해 주는 것으로 滿足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方法에 따라 計算하여 抽象的인 概念인 利益이나 財政狀態등을

14) Webster's 3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P. 2531.

15) 經營論叢 제19집 (高麗大1974), P. 211.

16) William A. Paton and A. 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 A. A., 1940) P. 12.

17) William. A. Paton. "Cost and Value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46, P. 193.

나타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間接測定(indirect measurement)의 特性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會計가 測定하는 對象中에는 利益, 流動性(liquidity)과 같은 直接評價할 수 있는 要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會計는 이들과 關聯된 現象中 實際로 測定할 수 있는 面(aspects)만을 몇가지 評價하여 一定한 方法에 의해 計算하여 그러한 計算의 結果로 얻어지는 것을¹⁸⁾ 利益이나 流動性이라 定義하는 間接的 測定方法을 使用하고 있다.¹⁹⁾ 間接的인 測定方法의 代表的인 예로서는 減價償却을 들 수가 있는데 減價는 한때 「固定資産의 性格上 不可避한 價値의 低下」로 看做되어 減價償却을 評價의 過程에 包含시켰었다. 그러나 近代會計에 있어서는 固定資産의 原價 및 기타 基本的인 價値에서 殘存價額을 差減한 殘額을 그 資産의 推定 耐用年數에 걸쳐 体系的이고 合理的인 方法으로 配分하여 주는 會計의 過程이며, 따라서 減價償却은 결코 評價의 過程이 아니라 配分(allocation)의 過程²⁰⁾이라고 보는 것이 支配的인 見解이다.

즉 評價는 個別的인 資産 負債 또는 自己資本 項目의 價値를 直接表現하는 過程으로 認識하고 會計의 測定은 評價 以外에 配分(allocation)까지도 포함하는 廣意의 概念으로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第5章 評價의 基準

資産評價에 있어서의 그 評價基準을 어디에다 두느냐? 即 價値決定의 方法에 대해서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1. 原價主義(cost basis)²¹⁾ 財産評價의 基準을 取得原價에 두는 것이며 오늘날 거의 支配的인 評價法이다. 이 主義에 의하면 ① 計算의 確實性 ② 損益計算에서 未實現의 損益을 計上치 않는 點 ③ 記帳計算이 용이한 點이 그 長點이나 財産의 現在價値를 나타내지 않는 點이 그 短點이라 하겠다.

2. 時價主義(Market price basis) 時價主義는 財産評價의 基準을 評價時點에 있어서의 時價, 즉 市場價格에 두는 것이다. 時價에는 그 計算基準時를 中心으로 하여 購置時價(再取得時價)와 賣却時價(換置價格)의 구별이 있다. 그러나 보통 時價라면 前者를 말한다. 이는 가장 正當한 資産의 現在價値를 表示할 수가 있으나, 計算의 不確實性和 節次의 困難性이 短點이 된다.

3. 低價主義 (Cost or Market Rule) 「原價 時價 比較 低價主義」(Cost or Market Price, Whichever is the lower)가 되는 것이다. (例 在庫資産評價) 이는 너무 消極的 方法이고 不合

18) Robert T. Sprouse, "The measur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income," R. Jaccicke, Y. Ijiri, and O. Nielsen(ed.), Research in accounting Measurement (A. A. A., 1966), P. 111.

19) Carl T. Devine, "Asset Cost and Expiration," Merton Backer(ed.), P. 143.

20) AICPA, Restatement and Revision of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 40(1955), P. 76.

21) 財務諸表規則起草報告書(1958. 6. 21)는 企業會計準則起草小委員會에서 決定한 것인데 다음과 같다. 評價問題에 있어서 原價主義와 時價主義의 두가지가 있는데 어느편을 採擇할 것인가의 問題다. 우리나라도 先進國家의 例에 따라 原價主義를 採擇하였다. 英國에 있어서는 1839年 破産法制定 및 1844年 會社法制定 以來 계속하여 原價主義를 基本으로 삼고 있다. 獨逸에 있어서는 在來 債權者 保護의 立場에서 時價主義를 重要視하였으나 1919年 Schmalenbach에 의하여 動的 貸借對照表論이 發刊된 以來 原價主義에로 發展하여 왔다. 美國에 있어서는 世界大恐慌以來 證券去來所가 再認識되어 株主·특히 投資大衆을 保護하는 立場에서 企業收益의 正確性에 置重하게 되어 原價主義가 勝利하였다. 이리하여 時價主義보다 原價主義가 企業의 期間損益計算을 正確히 하는데 合理的이라는 것이 世界의 共通된 意見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原價主義를 採擇하게 된 것이다.

理한 方法인 것이라 할 것이나, 企業財政의 堅實을 確保할 수 있는 方法이 되기도 한다.

4. 時價以下主義 (Value less than Market Price basis) 이것은 時價를 最高限度로 하는 것이며 時價가 原價보다 높을때는 時價까지 評價 引上을 하고, 반대로 時價가 原價以下로 下落한 경우에는 이 時價까지 評價할 必要가 있다. 以上中에서 原價主義의 論據와 時價主義를 分析하고 「E. S. Hendriksen의 “Account theory”」에 나오는 評價基準을 提示코져 한다.

1. 靜態論的 時價主義

財産計算 中心의 立場을 取하는 靜態論에 있어서는 資產評價의 問題는 會計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이다. 即 企業이 所有하는 財産에 대해서 實地在庫調査가 行하여 지나 그때 財産을 어떠한 價値로 決定할 것인가가 問題視된다. 따라서 會計는 評價節次(Process of valuation)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 資產에 대해서는 그 取得時의 價額(取得原價)과 現在時價에 差異가 發生하기 쉽기 때문에 貸借對照表에 어떠한 價額을 가지고 計上할 것인가 항상 문제가 된다. 靜態論에서는 會計의 目的을 財産計算에 두고 貸借對照表는 財産 計算을 위한 手段으로서 간주한다. 여기서 貸借對照表日에 있어서 資產의 代替原價가 要求되고 이것을 貸借對照表에 計上함에 따라 企業의 財政狀態가 正確하게 表示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時價主義에 따르면 當該原價에 不拘하고 現在의 時價로서 計上한다. 이에 貸借對照表에는 正確한 資產價値가 反映되게 되며 또 그 原價와 時價의 差額인 評價差益이 計上되고 이것이 損益計算書에 表示되게 된다. 문제는 時價의 測定 그것이 評價人의 主觀的 判斷에 따라서 左右된다. 따라서 客觀的으로 企業의 損益計算이 될 수 없다. 또 구체적으로는 產業經濟發展에 따라 固定資產의 膨大化의 現象이 새로이 나타나서 資產의 價値決定 그것이 全然 不可能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²²⁾

2. 動態論的 原價主義

(1) 取得原價主義

企業 經營成果의 計算을 그 目的으로 하는 動態論에 있어서 貸借對照表는 成果貸借對照表로서 作成되고 이는 企業의 財産價値를 反映시키는 것 보다도 오히려 正確한 損益計算을 反映시키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

時價損益은 단지 原價와 時價의 差益을 表示하는 것 만이고 그것은 正常의 營業過程에 있어서 實現된 損益은 아니다. 그러므로 動態論에 있어서는 時價가 어떠한 時價에 불구하고 資產의 價額은 取得 原價로써 貸借對照表에 記載된다. 原價主義는 財産計算을 中心으로 하는 債權者의 要請보다는 오히려 企業의 收益力이 관심을 가진 投資家의 見地에서 主張되게 되었고 또 한 資產評價의 基準으로 確立되었다.

原價主義는 資產의 取得에서 消費 또는 賣却에 이르기 까지 記錄計算上 「檢證可能性」(Verifiability)²³⁾ 「實現可能性」이라는 特性을 띄우고 있다. 또한 資產의 評價益 또는 未實現

22) 金光錫 企業會計原則, 1977. pp.441~442

23)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OP, cit., P.8. ASOBAT에 의하면 “會計의 基本的 特徵의 하나는, 서로 對立되어 있는 利害關係者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會計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 會計는 販賣者와 購買者, 納稅者와 徵稅者, 債務者와 債權者의 雙方에 情報를 제공한다. 이때 情報는 利害를 달리하는 當事者의 雙方에 다같이 利用되므로, 利害를 달리하는 利用者가 그 情報를 有用하게 活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情報가 信賴할 수 있다고 確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利益을 計上하는 것을 排除하는 點에 있어서는 損益計算上의 實現主義와 결부되고 있으며 反面에 保守主義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性格과 特性 때문에 原價主義는 특히 會計擔當者 또는 經營者가 財産의 관리 운영에 관한 代理人으로서의 受託責任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分配可能利益을 計算하는데 有用한 評價基準으로 되어 있다.

또한 原價는 그 資産을 取得할 때 實際로 支出한 價格이므로 그것으로 資産이나 費用을 評價한다는 것은 豫想이란 要素를 包含하지 않은 確實하고도 客觀的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實際로 購入한 價格으로 記入하고 있으므로 評價利益이 發生할 念慮가 없고 計算基準도 明確하므로 記帳도 간단하고 용이하다. 이 原價主義는 取得당시에 價値로써 確定되어 있으므로 그후의 市場價格이 어떻게 變하는 이것과는 關係가 없다는 思考方式에 있는 것이다.

(特徵) ② 計算構造上의 問題點

- ㉠ 測定對價主義
- ㉡ 原價配分主義
- ㉢ 原價主義의 缺點

測定對價主義는 資産의 原初記入價額을 決定한 경우의 表現이며 原價配分主義는 資産의 消費額 및 未消費額(貸借對照表價額)을 決定할 경우의 생각을 表現한 것이다.

㉠ 測定對價主義

資産의 記入價額은 取得時에 賣買當事者의 雙方이 同意하여 合意된 「評價」 또는 「去來價格」에 의한다는 것은 Paton과 Littleton이 主張한 바이지만²⁴⁾ 오늘날 企業會計實務나 企業會計原則 가운데 廣範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思考方式을 採擇하는데 있어서는 兩者間에 다음과 같은 相異한 論據를 볼 수 있다.

- (1) 原價即 價値說
- (2) 原價即 事實說
- (1) 原價即 價値稅

이는 Paton이 主張한 見解로서 그에 依하면 原價는 그것이 取得時의 公正한 價値와 거의 같다.²⁵⁾ 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會計의 基本的인 data는 지금의 價値이며 原價는 그것이 通常의 市場去來를 通해서 企業에 流入한 財貨 및 用役의 原初의 價値이므로 原價와 價値와는 對立하는 것이 아니다」²⁶⁾ 라고 주장하고 있다.

要컨대 이 「原價即 價値說」에 있어서는 去來價格 結局 資産의 取得原價는 價値를 表示하고 그것 때문에 測定對價主義가 採擇된다고 하는 思考에 입각하고 있다.

(2) 原價即 事實說

이는 A. C. Littleton이 主張한 바로 그는 會計는 記錄機能을 가지는 것이지 評價機能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原價는 價値를 表示하는 것이 아니고 確實한 事實 또는 既知의 事實을 表現하기 위해 採擇되는 것²⁷⁾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14세기 以後의 複式簿記가 價値를 取

24) W. A. Faton & A. 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AA, 1940, P. 11~13, P. 24~27)

25) A. Paton: Cost and value in Account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46., P. 193

26) W. A. Faton: "Corporation Accounts and Statements. (New York: Macmillan Co., 1955) P. 531

27) A. C. Littleton: "Value and Price in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Sep 1929. P. 153

扱하는 것이 아니고 收入과 支出이라고 하는 企業의 經濟的 事實을 記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原價配分主義

日本の 中島教授는 “費用配分原則”을 “費用配分基準은 同時に 資産評價基準이다”²⁸⁾라고 단적으로 表現하고 있는바 損益會計上の 費用額과 資産會計上の 貸借對照表價額을 決定하는 原理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AAA의 會計原價 1936年 試案에서 會計는 本質的으로는 評價의 過程이 아니고 歷史的 原價와 收益의 期間配分이다²⁹⁾라고 한 것이나 A.I.C.P.A 「用語公報」에서 減價償却會計는 配分の 過程이지 評價의 過程이 아니다³⁰⁾라고 한 것은 原價配分 原理를 잘 表現해 주고 있다.

資産評價의 問題는 종래까지 靜態的 財產計算中心의 會計理論에서 차지하고 있던 地位를 상실하고 期間損益의 測定속에서의 原價配分の 問題를 取扱하게 되었다.

即 原價配分結果 消費된 原價部分이 期間費用으로서 損益計算書上에 計上됨과 더불어 原價의 未消費部分을 將來의 收益에 對應시키기 위하여 資産으로서 貸借對照表에 計上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原價配分을 하기 위해서는 資産 貸借對照表 價額을 어떻게 決定할 것인가는 아주 重要한 問題이며 이 原理에 입각한 貸借對照表觀은 財政狀態觀(The financial position view)이 아니고 殘額表現(The Sheet of balance view)에 입각하고 있는 것을 認識해야 한다.

㉡ 原價主義의 缺點³¹⁾

1. 物價變動時

- (1) 時價와 差異
- (2) 減價償却費³²⁾ (最近賣出額과 過去 原價의 對比)
(費用收益對應計算上에 있어 그 合理性 缺如)
- (3) 名目的 利益이 分配可能利益에 混在, 分配된다는 것.
- (4) 實質資本 維持 困難
- (5) 經營者의 受託責任의 不實.

2. 資産保有期間中の 損益의 評價除外

3. 原價主義에서 行해지는 費用配分의 方法이 多樣化하고 있다는 점이다.

費用配分의 原則은

- ① 繼續企業의 전체하에서 期間損益計算이 行하여진다는 것.
- ② 費用性資産의 耐用 또는 有効期間이 數會計期間에 미치고 또한 有限이라는 것.
- ③ 費用性資産의 評價는 基礎原價에 의존한다는 것과 計算構造上의 이유로는
- ① 利益配當上의 株主間의 公正을 기도하기 위하여

28) 中島省吾: 「新會計基準의 理論」, 森山書店 P. 131

29) AAA, 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Affecting Corporate Reports, 1936.

30) A. I. C. P. A,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 In Accounting Research And Terminology Bulletin, Financial edition (New York: A. I. C. P. A 1961)

31) 梁貴鉉, 現代財務會計, 1977, P. 144~146

32) inflation이 進行中에 있어서의 商品原價中 減價償却 比率는 점점 過少計上이 되기 때문에 暴利를 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解放前 安全期에 있어서 總原價中 減價償却費의 比率이 13% 이었던 것이 解放後 米進 인플레이션에서는 0.1%로 低下한 것이 그 예다.

이것은 再評價에 의한 減價償却費의 修正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의한 商品값은 高價인데다 減價償却費는 더욱 늘어졌으니 一般消費者側에서 볼 때는 暴利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송대영 會計學 P. 268.

② 所得課稅를 행하기 위하여

③ 經營의인 收益力을 把握하기 위한 計算目的上的의 이유 때문에

오늘날 重要한 會計原則의 하나로 되어 있으나 原價의 期間配分方法은 經濟價値 또는 經濟的 効益의 消滅에 대해서 觀念的인 認識에 準거하는 경우가 많다. 더우기 保守主義, 便宜主義등의 實際的인 이유도 存在되기 때문에 多樣化 要素가 있으며 資產評價 및 損益計算上的 費用額에 큰 差異를 가져오고 있다.

最近 企業會計의 重要한 役割이 企業의 各種 利害關係者에 對한 意思決定에 必要한 會計情報을 提供하는데 있다고 할때, 會計情報에 대해서 「檢證可能性」(Verifiability) 보다는 「有用性」(Usefulness),³³⁾ 目的適合性(relevance)³⁴⁾을 중요시 하는 입장(情報會計論의 입장)에서 ①과 ②의 결점을 특히 지적한다.

이러한 결점을 除去하기 爲하여 修正原價主義會計로서의 貨幣價値變動會計(Price fluctuation) 또는 一般物價水準變動會計가 연구되며 더욱이 資產評價에 있어서 時價主義와 損益計算面에 있어서 發生主義가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③체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原價主義會計가 費用配分方法을 採擇하지 않는 賣價時價主義로 變化하든지 損益計算을 포기하여야 한다.

原價主義會計의 範圍內에서 그 多樣化를 加급적 抑制하고 繼續性의 原則의 적용으로 費用配分의 方法間的 變更을 加급적 抑制하는 것이 必要하다.

(3) E. S. HENDRIKSEN教授의 基準

損益計算中心의 動態論은 取得原價主義로써의 特徵을 가지고 있으므로 資產의 評價의 문제도 取得原價主義會計의 機溝內에 전개된다. 그러므로 原價以外的 價値는 原則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會計目的을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기 위한 有用한 情報을 마련하는데 두고 있으므로 資產評價問題도 情報의 利用者 目的에 適合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評價方法이 나타나고 있다. 交換 또는 換金이 이루어지는 市場은 購買市場과 販賣市場으로 區分하여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市場에서 이루어지는 交換도 두가지 類型의 交換價値(交換價格) 即 投入價値(input value)와 產出價値(Out put value)로 區分하여 볼 수 있다.³⁵⁾

이들 각각의 評價基準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⁶⁾

(1) 交換投入 價値 (exchange input values)

- ① 歷史的 原價 (Historical value)
- ② 現行投入原價 (Current input costs)
- ③ 標準原價 (Standard cost)

33) Maurice Moonitz,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 Accounting Research Study No.1. AICPA, 1961, pp. 4~5.

34) AAA의 ASOBAT에 의하면, "情報의 目的適合性이란 情報가 活用되려고 意圖된 行動 또는 언 오프리고 意圖된 期待結果와 關聯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것과 有効하게 關係를 가져야 한다는 要請"

(Relevance... requires that the information must bear upon or be usefully associated with actions it is designed to facilitate or results desired to be produced)

35) 李正浩 會計理論 1976. P. 219

36) E. S. Hendriksen, Account theory (Home 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70, P. 282.

④ 吸收原價 (Absorption costing), 直接原價計算 (direct costing)

(2) 交換產出價値 (exchange output values)

① 割引된 未來의 現金收入 또는 用役潛在力(discounted future cash receipts or service potentials)

② 現行產出價値 (Current output value)

③ 清算價値 (liquidation values)

(3) 低價主義 (lower of cost or market basis)

(1) 交換投入價値 (exchange input value)

① 歷史的原價 (Historical costs)

原價란 財貨나 用役을 取得할 때의 交換價格을 말한다. 交換時에 支給하는 代價가 非貨幣性 資産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交換價格은 交換에 의해서 상실되는 資産의 時價로 測定된다. 따라서 原價란 特定の 資産 또는 一群의 資産을 取得하기 爲해서 소요된 經濟的 犧牲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公認會計士會의 用語委員會에서는 會計가 주로 原價에 基礎를 둔이래 會計에 있어서 價値라고 하는 用語는 原價 또는 原價修正額을 뜻하고 極히 限定된 範圍內에서만 쓰인다³⁷⁾고 하고 있다.

美國會計學會가 發表한 1948年의 會計基準에 의하면 當該企業이 保有하는 諸資産의 取得 및 處分은 當該資産을 取得한 때에 確定하여 記錄한 原價數値로서 財務諸表에 報告하는 것이 一般의이다³⁸⁾라고 하고 있다.

同學會의 1957年 改正會計基準에서도 原價主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在庫資産 設備 長期投資 및 移延資産과 같은 非貨幣性資産은 본래 正確한 貨幣的 測定을 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이런 種類의 資産은 그 本來의 特性으로서 取得原價 또는 貨幣等 價額으로 表示된다. 自由로운 市場을 想定하는 限, 當該資産의 去來價格에 의하여 測定된 取得原價는 取得時의 當該資産이 갖는 장래의 期待用役을 計量化한 것으로서 만족할 만한 것이다,³⁹⁾라고 하고 있다.

② 現行投入原價 (Current input costs) 購入 時價主義)

現行投入原價는 現行原價(Current costs) 現行代替原價(Current replacement costs) 또는 再 調達原價 라고도 한다.

評價하려는 同種資産에 대한 賣買가 이루어지는 市場이 存在할때는 交換價格을 入手하여 所 有하고 있는 資産을 評價할 수 있다.

現行原價는 1964年 美國會計學會의 固定資産에 관한 報告書⁴⁰⁾가 發表된후 學界 및 實務界에 觀心事가 되었다.

AAA는 資産의 本質은 用役潛在力(Service potentials)에 있다고 하고 이를 發展시켜 評價 論 으로서는 歷史的 原價主義에 對立되는 現行原價主義를 지지하고 있다.

37) AICPA,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1 P.16

38) AAA,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 1948. Revision, P.14

39) AAA,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57. Revision, P.4

40) AAA, Accounting for land, Buildings and Equipment Supplementary Statement No1,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4).

③ 標準原價 (Standard costs)

生産比率과 操業度가 바람직한水準에 있다고 하는 假定下에서 '얼마의 原價가 되어야 한다, 그 하는 基準에 따른 評價概念이다.

④ 吸收原價計算 (absorption costing)과 直接原價計算 (direct costing)

製造된 資産에 評價額을 決定함에 있어 중요한 問題의 하나는 어떤 原價를 資産의 評價額에 算入하고 또 收益에 賦課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것이다. 非能率이나 遊休設備로 부터 나타나는 原價는 用役潜在力(service potentiality)을 갖지 못하므로 이것은 資産評價에 算入하면 안 된다.

(2) 交換算出價値 (exchange output values)

產出價値에 의한 評價方法에서는 資産이나 用役이 最終적으로 企業을 離脱할 경우에 交換으로 受取하는 現金이나 그 밖의 代價의 價値로서 評價의 기초를 삼는다.

① 割引된 未來의 現金收入 또는 用役潜在力 (discounted future cash receipts or service potentials): 用役潜在力에 관한 가장 正確한 定義는 美國會計學會(AAA)의 1957年 會計原則에서 볼 수 있다.

"資産價値는 用役潜在力の 貨幣額" 이라고 하고 있고 이어서 概念的으로 이것은 用役全体 흐름의 未來 市場價格合計額을 確率과 利子率에 의하여 現在價値로 割引한것⁴¹⁾ ⁴²⁾이라고 하고 있다.

同一한 意味로 解釋한 사람으로는 Sidney, S. Alexander가 있다.

……經濟理論에서 資産은 그것이 未來에 受取할 것으로 期待되는 것을 現在價値로 評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코빈(Donald, A. Corbin)은 資産價値란 全未來所得의 흐름을 現在價値로 割引한 總計⁴³⁾ (The asset's value is the sum of the present values of the entire income stream.)라고 하고 있다.

Sprouse와 Moonitz도 資産의 測定問題에 關하여 "一般的으로, 이들 資産(貨幣 또는 貨幣請求權)의 評價는 그 換金額, 即 割引된 未來의 交換價値를 基礎로 하여야 한다."⁴⁴⁾ ⁴⁵⁾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用役潜在力은 特定資産이 未來의 一定期間에 벌어들일 貨幣額의 現在價値 또는 割引된 價値에 의하여 評價된다고 하면 用役潜在力을 測定하기 위해서는 ①受取金額 ②期間 ③얼마로 割引한 것으로서(割引率) 稼得 될 것인가? 하는 問題를 決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래의 다른 시점에 受領하는 金額의 現在價値는 지난기간에 해당하는 一定利率의 利子를 差

41) AAA,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57. Revision, P. 4

42) The value of an asset is the money-equivalent of its service potentials. Conceptually, this is the sum of the future market prices of all stream of service to be derived, discounted by probability and interest factors to their present worths.

43) Donald A. Corbin, Accounting and Economic Decision (Dodd, mead & company, Inc. 1964) P. 224.

44) R. T. Sprouse and M. M. Moonitz,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3 (New York, AICPA, 1962) P. 24

45) As a general rule, the valuation of these assets (Money or claims to money) should be based on the amount of cash into which they will be converted, that is, their discounted future exchange prices)

減한 額數이어야 한다.

即 현재로부터 1年後에 수령될 \$ 1의 現在價値는 적정한 割引率이 10%이라고 할때 0.909이다. 다시 말하면 10%의 率을 적용하면 현재 手中에 있는 \$ 0.909은 1年後에 \$ 1을 受領할 約束과 같다는 것이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手중에 있는 \$ 0.826이 2年後에 \$ 1을 受領할 約束과 같다는 것을 表示한다.

더우기 현재 手中에 있는 \$ 0.751은 3年後에 \$ 1을 受領할 約束과 같다.

이것은 資產의 現價를 P, 受取될 貨幣額을 S, 割引率을 r, 그리고 待機年數를 n이라고 할때, 現價 P는 다음 公式으로 구할 수 있다.⁴⁶⁾

$$P = S(1+r)^{-n} \quad \text{또는} \quad P = \frac{S}{(1+r)^n}$$

用役潛在力을 資產의 本質로서 본 AAA는 評價로서 現行原價主義를 지지하고 있다.⁴⁷⁾

以上으로서 多數의 評價方法을 考察하였으나 各方法마다 充分하고도 正當한 批判을 내려야 하며 그러기 爲하여는 어떠한 態度를 取하여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③ 選擇上의 問題點

㉞ 그것은 어떠한 社會經濟的 個別經濟的 根底下에 提唱되었는가, 그 歷史的 使命은 무엇인가? 를 알아야 한다.

㉟ 어떠한 領域에서 妥當性 또는 合目的性을 가지는가? 即 그 學說의 制約性과 有用性과를 理論的으로 明白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㊱ 學說의 提唱者의 世界觀 科學觀 經歷 性質등과 어떠한 關聯을 갖는가를 알아야 한다.⁴⁸⁾

要約하여 보면 實務者가 어떤 評價學說 어떤 評價原則에 따라 評價處理를 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恒常 그것이 適當하다고 하는 前提 條件 限界 등을 알고 그 適用을 그 限界內에 限定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外部的 制約과 內部的 制約 特히 經濟狀態의 變化等에 應하려는 從來의 評價處理에 대하여 充分한 檢討 吟味를 함으로서 評價處理를 伸縮性있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困難한 事象問題가 突發된다고 하여도 無秩序한 會計의 混亂을 없게하기 爲하여는 科學的인 思考와 正當한 判斷을 내릴수 있도록 合理的인 方案을 모색할 必要가 있다.

第6章 資產評價의 特殊한 事例

資產取得의 特殊形態와 所有資產에 있어서의 特殊評價에 關하여 分析한다.

1958년에 企業會計準則起草小委員會가 發表한 「企業會計原則第」(第5節第6)과 1974년에 制定 公布된 「上場法人等の 會計處理에 關한 規程」第23條의 規定과 改正 企業會計原則 第5節第1에 의하면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의 測定基準을 當該資產의 取得原價에 두고있다.

또한 法人稅法 施行令 第48條의 規定에 의하면 減價償却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은 다음과 같이

46) Robert N. Anthony, "Management Accounting: Text and Cases R.N. 안토니 管理會計, 美國經營學會集⑩ 韓國生產性本部 1973. P. 352.

47)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Preceding Statements and Supplements (Columbus: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pp. 3~4

48) 杉本秋男 會計學要論 1939. P. 297.

測定計上하도록 되어 있다.

- ① 買入한 固定資産은 買入當時의 그代價 (登錄稅 取得稅 기타 附帶費用을 포함한다)
- ② 自己가 建設製作등에 의하여 取得한 固定資産을 原材料費, 勞務費, 運賃, 荷役費, 保險料, 手數料, 公課金, 設置費, 其他 附帶費用의 合計金額)
- ③ 前各號 外의 固定資産은 取得當時의 正常價額

위의 法人稅法上의 固定資産의 取得價額에 관한 規定은 企業會計原則에서 規定된 取得原價를 取得形態에 따라 보다 具體적으로 例示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一般적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原則上 取得原價란 當該 資産을 取得하는데 所要發生 및 支配된 實際原價를 意味하는 것일까? 特殊事例의 取得原價의 概念 및 範圍를 考察한다.

1. 無償取得의 資産

無償에 의한 有形固定資産의 取得形態는 一般적으로 贈與 (donatin, gift) 습득 또는 우연한 발견등으로 區分될 수 있을 것이다.

贈與의 경우 그것은 有用성은 있으나 이것을 會計의 通常方式에 따라 表示하는 바의 取得原價가 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贈與된 資産은 經營者의 所有에 屬하므로 贈與者의 贈與의 目的과 그것을 받아서 그와 같은 目的에 適用하는 것은 經營者의 責任이며 당연히 會計적으로 表現되어야 하며 他의 資産과 똑같이 取扱하는 것이 適當하다. 企業의 資産으로서 帳簿에 記載해야 한다. 現金이든 在物調査資産이나 設備資産인 때에도 또한 特許權과 같은 無形資産 (intangible assets) 일지라도⁴⁹⁾ 그것은 受贈當時의 購入時價로 評價하여야 할 것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時價를 確定하기가 困難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過大하지 않도록 時價를 測定함으로써 이 경우는 充分하다.

贈與를 받은 資産의 會計處理에 對하여 問題되는 것은 簿記의인 表現으로 말하면 그 貸邊記入의 性格이다.⁵⁰⁾

「上場法人等の 會計處理規程」第27條 規定에 따르면 贈與에 의하여 有形固定資産을 取得한 경우에는 公正한 評價에 依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公正한 評價額은 時價를 基準으로 해서 測定되는 金額이므로 이는 原價主義에서 離脫된다고 하는 問題가 제기될 可能性도 있다.

Paton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贈與에 의한 取得資産의 取得價額은 公正한 時價에 依하여 測定 記錄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現物出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贈與에 의해서 外部의 第三者로부터 取得된 모든 資産은 當該資産의 公正한 時價에 따라 受贈會社에서 計上되어야 할 것이다. 企業活動의 健全한 營理는 當該企業이 取得한 모든 資源을 源泉如何에 不拘하고 當該資源의 實際價値로서 認識할 것을 要求한다.

原價는 購入에 따라 取得한 資産의 경우에만 當初의 會計責任의 基礎로서 重要한 것이며 購入(製作 포함) 以外의 方法으로 取得된 資産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即 Paton에 따르면 原價는 購入에 의한 資産取得에 對해서 會計責任을 表示하는 것이므로 贈與에 의한 資産取得에는 原價

49) Eric L. Kehler, A Dictionary for Accountants, 4th edition (Frentice-Hall, Inc, 1970). P.235. 구체적인 存在形態를 가지고 있지않는 資産으로서 그 價値는 所有主에 귀속하는 權利 및 期待되는 効益에 의존한다.

50) 木村重義 決算評價論 1958. P.151

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當該資産의 會計責任은 原價가 아니고 時價에 의해서 表示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贈與에 의하여 取得한 資産에는 原價主義의 原則은 適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Finny와 Miller의 見解에 따르면 會計의 目的은 會計의 責任을 反映하는 것이므로 經營者가 그 責任을 負擔하고 있는 모든 資産에 대하여 어떠한 價額을 붙여 報告하는 것이 適當하다는 것이며 資産이 贈與에 의하여 取得된 경우에는 會計責任을 表示하는 金額은 當該資産의 公正한 價値에 의하여 適正히 測定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即 贈與에 따라 取得한 資産은 原價가 없기 때문에 公正한 評價額을 가지고 原價代身에 利用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受贈資産에 대해서 原價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理由로서 當該資産의 取得金額이 計上되지 아니하면 受贈者인 經營者가 贈與者에 對해서 會計責任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贈與에 의해서 資産을 取得한 경우 公正한 評價額에 의하여 當該資産의 取得價額을 測定한다는 것은 取得後에 있어서도 時價를 基準으로 해서 評價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未實現利益이 計上될 餘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贈與當時의 公正한 時價에 의하여 測定計上하는 것이 결코 取得原價主義에 矛盾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⁵¹⁾

法人稅法上은

法人稅法施行令 第48條의 規程에 따르면 贈與에 의하여 取得된 資産의 取得價額을 取得時의 正常價額에 의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여기서 正常價額이란 企業會計理論에서 公正한 評價額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低價取得

相對去來處와의 特殊關係 法律上の 特權 또는 우연한 事情에서 正常市場價格보다도 현저히 낮은 價格으로 固定資産을 取得하였을 경우 當該資産의 取得價額을 어떻게 測定計上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企業會計理論上 取得原價主義에 立脚하여 測定計上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資産의 取得에 要한 實際支給된 또는 支給될 價額으로 測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取得價額이 客觀性原則 및 原價計算上の 正常性的 原則을 감안한다면 正常去來價額을 意味한다고 하여야 한다.

實際支給額과 正常去來價額과의 差額은 資本剩餘金으로 計上하는 것이 妥當하다.

企業會計原則에 있어서 眞實性的 原則이 絶對的 眞實을 要請하는 것이 아니라 相對的 眞實을 要請하고 客觀性原則을 생각할때 差額을 計上하는 것을 是認해야 한다.

木村重義教授는 購入된 資産의 購入價格이 그때의 通常의 購入時價보다도 顯著히 認定될만큼 低價인 때에는 거기에 購入利益이 認定되고 그것은 贈與된 資産에 대하여 贈與利益 (donated surplus)⁵²⁾ (贈與資本과 區別된 意味의 利益剩餘金에 屬하는 利益)과 똑같이 處理되는 것이 더욱 論理的이다라고 하였다.

法人稅法에는 明文 規定은 없지만 正常市場價格說과 實際支給去來된 價格說이 있다. 우리 나라의 商法 및 稅法등에 있어서 資産評價에 대하여 그 取得價額을 資産의 原價로 보도록 規定하

51) 金光錫 新企業會計原則 韓國稅政新報社 1977. P. 453.

52) Eric L. Kohler, A Dictionary for Accountants, 4th ed (Englewood clitt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0) P. 165

李正浩, 會計理論 1976. P. 259 “資本剩餘金으로서의 贈與剩餘金으로 記帳하여야 한다.

고 있으므로 市價보다도 저렴한 取得行爲는 無償과는 區別되어야 할 것이므로 低價取得時 當該 資産의 取得價額은 實際支給된 低價價額으로 測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法人稅法施行令 第40條의 規定에 의하면 法人의 所有資産을 正常價格보다도 낮은 價格으로 讓渡한 경우 正常價格과 讓渡價格과의 差額은 寄附金으로 認識 計上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讓受者(買入者)의 立場에서는 受贈益으로 測定計上되어야 한다는 反對解釋이 이루어진다.

日本法人稅法에 있어서는 贈與에 相當한 時價와 현저히 저렴한 價額과의 差額을 取得原價에 算入하는 同時에 그 差額을 一時償却하도록 取扱하고 있다.

3. 高價取得

有形固定資産을 正常市場去來價格보다 현저히 높은 價格으로 取得하였을 때에는 經營者에 責任이 있으며 그 購入損失은 當該年度의 損計算書에 明示되어야 한다.

Karren Brock와 Simons의 見解⁵³⁾에 따르면 企業會計理論上 一般價格보다 높은 價格으로 取得한 資産은 正常市場去來價額으로 測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그 理由로서는 保守主義의 原則을 들고 있다.

企業의 所有資産中에 새로이 有用성이 있는 資産이 發見된 때에도 一種의 無償取得이기는 하나 이것은 實質적으로는 所有資産의 지금까지의 有用성이 增大한 評價利益의 境遇와 區別할 것이냐 아니냐는 疑問이다. 이와 같은 偶然히 發見된 增大(Accretion)나 增價(Appreciation)는 未實現인 동안은 無視되는 것이 普通이다.

4. 一括取得 (Mixed acquisition for lump sum)

相異한 資産의 一團이 一括取得된 때의 評價가 會計上 特히 問題로 되는 境遇는 企業의 合併과 營業의 買收를 하는 때이다.

合併에 依하여 成立한 企業이 合併된 企業의 資産을 其帳簿에 記載하는 價額은 在物調査資産에 對하여는 當時의 一般購入價格 債權에 對하여는 回收可能價額, 設備資産, 無形資産 및 有價證券에 對하여는 當時의 一般的인 去來價格이다. 다만 設備資産에 對하여는 똑같은 것의 當時의 再取得原價의 見積額에 依하나 한편 그 耐用期間의 經過年數에 해당하는 減價償却充當金を 貸邊計定에 記錄하여야 한다.

5. 交換에 依한 取得

어떤 經營財를 取得키 爲하여 他의 經營財를 交付하는 때에는 그것을 買入去來인가 販賣의 去來인가 어떻게 解釋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다.

交換에 依하여 引渡된 資産의 帳簿價額으로 取得된 財産의 價額으로 하면 그것은 買入去來의 形態이나 交換에 依하여 取得된 財産을 引渡한 資産의 帳簿價額과는 別途로 獨立하여 價額을 붙이면 그것은 販賣去來의 形態를 取한 것으로 된다. 이 경우 現金原資가 流入하지 않으므로 販賣로서 賣上利益을 計上함은 正當치 않다. 如何든 交換이 買入이라고 解釋되는 境遇에는 取得된 財産은 引渡된 資産의 價額을 붙이게 되고 그것이 販賣의 去來라고 解釋되는 때에는 取得된 資産은 그것의 當時의 一般的인 買入市場價格으로 評價하는 것으로 된다.

53) H. Simons and W. E. Karren Brock, Intermediate Accounting, Comprehensive volume, 4th edition (Cincinnati, Ohio: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65), P. 409.

第7章 評價法規

1. 商法上的 評價規定

㉔ 資產評價에 관한 一般原則 (一般規定)

一般原則으로서의 商法 第31條는 資產評價에 관하여 ① 時價主義의 原則을 규정하여 그 財產의 價額을 財產目錄作成當時의 價格에 의하고 있다. 이는 商法이 資產을 負債償還의 수단으로 삼고 繼續企業의 가정을 否定하고 企業解散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② 營業用 固定資產에 對하여는 「原價-減價償却費」로 評價하여 즉 時價以下主義로 하고 있다.

㉕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特別規定(商法452條) 그러나 株式會社에 있어서는 그 營利性으로 말미암아 그 特別이 인정된다. 이를 商法 第452條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資產은 원칙적으로 取得原價主義에 의하나 流動資產의 경우에 한하여 時價가 原價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인 때는 低價主義를 採擇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固定資產의 경우에 있어서 偶發的 減損이 생기면 第31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그 額을 控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未實現利益의 計上을 禁止하고 있다.

(2) 金錢債權에 대해서는 債權金額에 의하여 表示하되 貸借損失의 減額 處理를 認定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正確한 損益計算을 위해 絕對로 必要하다.

(3) 去來所의 時勢있는 有價證券 및 社債는 原則적으로 時價主義를 擇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所有의 目的別에 따라 그 評價基準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은 新商法의 進歩的인 면을 단적으로 表示하고 있다.

여기에서 商法이 時價主義를 原則으로하고 있음과 第452條 特別規定에 原價主義 및 例外 規定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과⁵⁴⁾ 企業會計原則⁵⁵⁾

規程第四章 資產, 負債의 評價 項과 原則 第五節 1~11 項은 同一內容이므로 規程內容中 必要部分만 記述한다.

第23條 「資產의 評價原則」 ① 貸借對照表에 記載하는 資產의 價額은 當該資產의 取得原價를 基礎로 하여 計上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資產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하여 資產을 再評價한 경우에는 그 再評價額을 基礎로 하여 計上하여야 한다.

② 資產의 取得原價는 資產의 種類에 對應한 費用配分의 原則에 의하여 各會計年度에 配分하여야 한다.

③ 有形固定資產은 當該資產의 耐用年數에 걸쳐 一定한 減價償却方法으로 各會計年度에 配分하고 無形固定資產 및 移延資產은 有償取得의 對價를 一定한 減價償却方法에 의하여 各會計年度에 配分하여야 한다.

第23條 ②項에 보면 費用配分의 原則에 따라 資產의 概念 및 資產의 評價의 문제는 모두 原價(費用, 拋棄된 生産物 및 用役要素, product and service factors given up)의 문제로서 취급

54) (1947. 7. 18 대통령令 第7199號) 改正 1976. 7. 28 大統領令 第8197號

55) 企業會計原則 (1976. 7. 22 財務部長官) 證券審議委員會, 企業會計分科委員會가 提出한 企業會計原則을 受理하였기 이에 公布한다. 1976. 7. 22 財務部長官 金龍煥

된다.⁵⁶⁾ 따라서 會計는 評價의 節次(process of valuation)가 아니고 配分의 節次 (process of allocation)라고 말할 수 있고 動態論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費用을 配分하고 못한 나머지가 곧 貸借對照表에 表示되는 評價額이다.

第27條 (有形固定資産의 評價) 有形固定資産에 대하여는 買入原價 또는 製作原價에 取得附帶 費用을 加算한 價額에서 減價償却累計額을 控除한 價額을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함을 原則으로 한다.

② 贈與 기타 無償으로 取得한 資産의 價額은 公正한 評價額을 取得原價로 함을 原則으로 한다.

위의 第27條 ②項 公正한 評價란 法人稅法施行令 第48條에 따르면 取得時의 正常價格과 相應한 것이다. 公正한 價額으로 評價할 경우 剩餘金의 分類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는 木村重義 教授는 贈與資本과 區別된 意味의 利益剩餘金에 屬하는 利益으로 處理하였으나 李正浩教授는 資本剩餘金으로서의 贈與剩餘金으로 記帳하여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法人稅法令 第40條의 規定에 의하면 正常價格 以下의 價額으로 讓渡한 경우 差額은 寄附金으로 認識計上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讓受者(買入者)는 受贈益으로 보아야 한다는 反對解釋이 되기 때문에 資本 剩餘金으로 처리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第8章 評價基準의 選擇

評價란 企業資産이 가지는 價値의 吟味에 不過한 것이나 이 資産이 갖는 價値가 單一種이라면 問題는 없다. 그러나 經濟學에 있어서나 會計學에 있어서나 價値에 對하여는 極히 많은 異見이 있고 其價値의 認識 즉 基準價値 選定 方法 如何에 따라서는 會計理論全般에 影響을 주고 損益 計算書 貸借對照表의 本質에도 關係된다.

그러므로 評價를 할 때 어떠한 價値를 가지고 그 評價의 基準으로 할 것이냐의 評價基準價値選定의 問題는 極히 重大한 것으로서 마치 會計學의 中心課題(center of gravity)⁵⁶⁾이라고 보아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基準의 選定은 觀點의 差에 依하여 相異한 價値를 主張 選定하게 됨으로 이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 主觀價値와 客觀價値

㉞ 主觀價値 (Subjektiverwert)

이것은 企業의 所有하는 資産價値를 企業經營者의 主觀的인 判斷에 依하여 決定되어야 할 것

56) AAA, 1964 Concepts and Standards Research Study Committee- "The Matching Concept,"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65), P. 369.

56) A. C. Littleton,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Monograph No. 5, 1953. 8. 18. Littleton은 中心課題를 利益(income)에서 찾으려 하였다. 모든 基礎科學의 中心課題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Examples of characteristic notions of this sort includes: for arithmetic, number; for geometry, point; for physics, force; for astronomy, space; for biology, life; for psychology, consciousness; for logic, thinking; for ethics, goodness; for esthetics, beauty; for music, consonance; for law, justice; for government, equality; for economics, values; for accounting, _____ ?

이며 各個資産은 그 企業에 利用되는가 어떤가를 判斷하므로써 價値決定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주로 使用價値를 가르킨다고 볼수 있다.

㊦ 客觀價値 (objektiuerwert)

이것은 市場價値인 동시에 去來所價値이다. 이 價値는 資産價値가 企業內部보다도 企業外部에 對하여 더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는 根本思想에 立脚된 것이다. 兩者를 綜合하여 보면 企業의 資産이란 貨幣와 貨幣로서 測定할수 있는 有形無形의 具體的인 事物이며 企業資産을 貨幣額으로 表示한 數量이 資産의 價格이다.

會計學上問題는 恒常 價格을 重心으로 하거나와 價格이란 市場에서 評價過程을 통하여 成立되는 것이지 決코 個人的 主觀的判斷에 依하여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 市場이란 個人的 價値判斷을 벗어나서 이에 對抗하는 客觀的價値標準이 造成되는 場所이며 市場에서의 評價過程은 多數人에게 共通的으로 妥當할 수 있는 한個의 集合的評價가 決定되는 過程이라 볼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貸借對照表의 役割이 企業의 正確한 財政狀態를 記錄한다는 意義보다도 財政狀態를 社會大衆에게 報告한다는데 더 큰 意義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評價價値도 一般的으로 妥當한 것이어야 하며 그 누구든 當該企業의 實情을 잘 觀察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主觀價値보다도 客觀價値이어야만 一般的으로 通用될수가 있다고 본다.

會計評價의 結果는 會計主體에 관련된 現象의 價値를 나타내 주는 것이지만 評價基準에 따라 同一한 現象에 대한 會計測定值라 할지라도 그 지니는 意味는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會計가 그 測定值를 통하여 經濟的 現象에 관한 意味(Significant)있는 情報內容을 傳達하기 위하여는 그 情報의 利用目的에 適合한 (relevant) 意味를 가지는 測定值를 提供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適切한 評價基準의 選擇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評價의 結果로 나타난 會計測定值가 利用目的에 適合하지 않은 것이나 目的에 適合한 概念의 것이라도 測定過程에 主觀的인 偏見의 作用으로 信憑性(reliability)이 缺如된 것이나 意思決定을 誤導(Misleading) 한다는 結果的인 面에 있어서는 差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高度로 發展된 測定技術을 期待할 수 없었던 傳統的인 會計가 歷史的 原價에만 크게 存在하여온 事實은 肯定的으로 理解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統計學 情報理論 記號論理學 등 關聯分野에서 發展된 概念과 測定 및 情報處理技術이 會計에 導入됨에 따라 客觀性的 維持를 爲하여 加해지는 目的適合性에의 制約은 점차 그 妥當性을 잃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目的適合性(relevance)은 現代 會計學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基準으로 勸告되고⁵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會計가 社會의 期待하는 바의 有益한 社會的 機能을 滿足하게 遂行하기 위하여는 多數의 相異한 目的을 爲하여 有用하게 利用될 수 있는 多重的인 評價基準을 利用할 수 있도록 되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統合的인 情報 system으로서의 會計는 여러가지 可能한 評價基準을 利用하고 會計資料를 蒐集하여, 그러한 資料中 要求에 따라 特殊目的에 맞는 概念의 情報를 提供하여야 할 것이다.⁵⁹⁾

58)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 P.6 (ASOBAT)

59) Morton Backer, "Accounting Theory and Multiple Reporting Objectives," P. 447.

第9章 結 論

評價는 會計學에 있어 重要な 問題中의 하나이다. 評價基準 및 方法의 選擇如何로 經營成果와 財政狀態가 變할 수 있기 때문에 會計測定에 있어서의 評價의 重要性은 결코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帳簿에 記錄된 價値를 重心으로 하는 原價主義는 使用 또는 消耗된것을 비용으로 配分하는 과정으로 評價를 결정한다.

債務辨濟를 목표로 하는 時價主義는 客觀的인 진실한 評價를 (正常去來) 資產의 評價로 主張하고 있다.

위의 兩評價方法 및 基準은 資產項目의 性質에 따라서 商法 會計 原則 稅法에서 制度會計의 인 測面에서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그報告된 資料를 利用하는 立場 즉 企業家投資者 稅務者등의 有用性(usefulness) 目的의 適合性(relevance)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制度的 統一성과 單純化를 시도하여 主觀的 會計處理를 防止하고 客觀的 會計評價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會計實體에 關聯된 여러 利害關係者의 合理的 意思決定의 目的에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會計는 따라서 그 測定過程에서 여러가지 概念中 利用目的에 適合한 것을 選擇하여야 할 것이다.

評價基準이 相異함에 따라 評價結果로 얻게 되는 測定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各測定值의 意味가 妥當하고 適切하게 利用될 수 있는 意思決定 situation도 달라진다.

目的의 適合性(relevance)은 이러한 意味에서 會計情報의 測定過程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會計基準(accounting standard)이나 實務에 있어서는 測定過程에 客觀性을 維持하여야 한다는 相鬪되는 考慮에서의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測定技術의 發展됨에 따라 客觀性的 維持라는 問題는 점차 解決될 수 있고 따라서 目的에 適合한 測定을 위한 評價基準의 選擇은 相對的으로 그 重要性이 增大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資產評價에 있어서 敘述한 바와 같이 現在原價 (Current cost) 公正市場價値 (fair market value) 概念에 의한 代替的 評價方法을 活用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 | | | | | |
|-----------------|---|---|---|------|
| (1) 梁貴滋: 現代財務會計 | 法 | 文 | 社 | 1977 |
| (2)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 經 | 文 | 社 | 1976 |
| (3) 趙益淳: 現代會計學 | 博 | 英 | 社 | 1975 |
| (4) 鄭守永: 新會計學 | 博 | 英 | 社 | 1976 |
| (5) 宋吠永: 近代會計學 | 法 | 文 | 社 | 1975 |
| (6) 蘇眞德: 會計原理 | 博 | 英 | 社 | 1975 |
| (7) 李龍擇: 會計學 | 博 | 英 | 社 | 1976 |

資產評價에 관한 會計學의 研究

- | | | | |
|------|-----------------------|---------|------|
| (8) | 金海天 高廷燮 池清 共著：經營意思決定論 | 博 英 社 | 1974 |
| (9) | 盧宣鎬：新會計學 | 法 文 社 | 1976 |
| (10) | 李海東, 張良術：財務諸表規則解說 | 一 潮 閣 | 1976 |
| (11) | 申文澈：最新會計學 | 博 英 社 | 1975 |
| (12) | 姜一秀：新財務諸表論 | 博 英 社 | 1977 |
| (13) | 林震燮：會計學 | 法 文 社 | 1974 |
| (14) | 李雄根：會計學要論 | 受 驗 社 | 1975 |
| (15) | R. N안토니：管理會計 | 韓國生產性本部 | 1973 |
| (16) | 金光錫：新企業會計原則 | 韓國稅務新報社 | 1977 |
| (17) | 東國大學校大學院：研究論集 | | 1976 |
| (18) | 全南大學校經營大學院：經營論叢 | | 1976 |
| (19) | 韓國會計學會：會計學研究 創刊號 | | 1977 |
| (20) | 稅法典： | | 1977 |
| (21) | 經營學辭典 | 博 英 社 | 1976 |
| (22) | 經營學研究：韓國經營學會 | | 1977 |

外國文獻

- | | | | |
|------|---|--|------|
| (1) |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 | 1966 |
| (2) | AAA, 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Affecting corporate Report, | | 1936 |
| (3) | W. A. paton, Essentials of Accounting, | | 1945 |
| (4) | A.C. Littleton; Essays on Accountancy, Univercity of Illinois Press, | | 1961 |
| (5) | A.C. Littleton;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AAA 1953) | | |
| (6) | W. A. paton & A.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AA 1940) | | |
| (7) | W. A. Paton; Corporation Accounts and statements., New MacMillan Co. | | 1955 |
| (8) | J. W. Pattillo; The Foundation of Financial Accounting. | | 1965 |
| (9) | A.C. Littleton;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 | 1953 |
| (10) | Herbert A. Simon; Theories of Decision making in Economics and Behavioral Sc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9, No. 3 June | | 1959 |
| (11) | Websters 3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 | |
| (12) | William A. Paton; Cost and value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 | 1946 |
| (13) | 中島省吾：新會計基準の理論, 森林書店 | | |
| (14) | Maurice Moonitz;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 AICPA. | | 1961 |
| (15) | E. S. Hendriksen; Account theory (Home wood Ill; Richard D. Irwin, Inc) | | 1970 |
| (16) | Donald A. Corbin, Accounting and Economic Decision. (Dodd, Mead & company Inc 1964) | | |
| (17) | 杉本秋男：會計學要論 | | 1939 |

- (18) 木村重義：決算評價論 1958
- (19) H. Simons and W.E. Karren Brock-Intermediate Accounting, Comprehensive
Volume 4th edition(Cincinnati Ohio: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65